

#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1402
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12월 19일  
제안자 : 교 육 위 원 장

## I. 수정이유

-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## II. 주요내용

- 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함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9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)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혁신교육지 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 원의 임기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 간으로 한다.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. ③ <u>교육감은 위원이 사회적으로 물의 를 일으켜 혁신교육지구와 동료 위 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 우 위원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 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.</u>	제9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) ①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 천한 위원의 임기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으로 한다.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. <u>&lt;삭 제&gt;</u>

##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서울형혁신교육지구”(이하 “혁신교육지구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.
- ② “혁신교육지구 사업”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, 학부모, 교원,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·관·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동·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교육 혁신 사업
2. 마을과 학교의 협력 지원 사업
3. 학교 밖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
4. 지역연계 교육복지 지원 사업
5.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
6.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
7.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)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단,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.

- ②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⑤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담당자를 상호 파견하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·지원할 수 있으며,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평가, 연장 및 지정의 해지)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지정 2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혁신교육지구의 운

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제6조(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 마다 혁신교육지구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고 한다.)을 세워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
- 2.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
- 3. 혁신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
- 4. 연차별 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
- 5. 혁신교육지구의 지정·운영·지원·평가 방안
- 6. 그 밖에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제고와 관련된 사항

제7조(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은 혁신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“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 협의
- 2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교육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·조정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협의
- 3.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
- 4.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의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과 시에서 각각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, 국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.

- 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
- 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- 3.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
- 4.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

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 및 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,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,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

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⑤ 간사는 교육청과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하며,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내용, 예산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5조(대외협력)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대학,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는 본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